

의안번호	제125호
의결 연월일	2015년 월 일 (제337회)

충청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
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안자	의회운영위원장
제안연월일	2015년 1월 27일

충청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25
----------	-----

제안연월일 : 2015년 1월 27일
제안자 : 의회운영위원장

1. 제안이유

- 민선6기 조직개편에 따른 「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」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충청북도의회 상임위원회의 소관 등을 정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“미래전략기획단”을 정책복지위원회 소관으로 정함
(안 제4조제2항제2호가목)
- 행정문화위원회의 “청원·청주통합추진지원단”을 삭제함
(안 제4조제2항제3호가목)
- “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” 소관을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산업경제위원회로 조정함
(안 제4조제2항제4호바목)

3. 개정조례안 : 별첨

4. 신구조문 대비표 : 별첨

5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별첨
- 예산조치 : 해당없음
- 규제관련사항 : 해당없음
- 입법예고여부 : 해당없음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
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제2호가목 중 “규제개혁추진단”을 “규제개혁추진단, 미래전략 기획단”으로 하고, 같은 호 바목을 삭제하며,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“문화체육관광국, 청원·청주통합추진지원단”을 “문화체육관광국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바.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운영에 관한 사항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) ① (생략)</p> <p>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정책복지위원회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가. 여성정책관, <u>규제개혁추진단</u>, 기획관리실, 보건복지국, 충북도립대학,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나.~ 마. (생략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바. <u>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 운영에 관한 사항</u></p> <p>3. 행정문화위원회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가. 공보관, 감사관, 안전행정국, <u>문화체육관광국</u>, <u>청원·청주통합추진지원단</u>, 자치연수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나.· 다. (생략)</p> <p>4. 산업경제위원회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가.~ 마. (생략)</p>	<p>제4조(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가. ----- <u>규제개혁추진단</u>, <u>미래전략기획단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나.~ 마. (현행과 같음)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<u><삭 제></u></p> <p>3. -----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가. ----- ----- <u>문화체육관광국</u>----- ----- -----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나.· 다. (현행과 같음)</p> <p>4. -----</p> <p style="padding-left: 20px;">가.~ 마. (현행과 같음)</p>

<신 설>

5.· 6. (생 략)

③ (생 략)

바.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
운영에 관한 사항

5.· 6. (현행과 같음)

③ (현행과 같음)

관계법령 발췌

□ 지방자치법

제56조(위원회의 설치)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위원회의 종류는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·처리하는 상임위원회와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·처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두 가지로 한다.

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.

제62조(위원회에 관한 조례) 위원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